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8 - 29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취지

일부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합성수지제품을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2. 제정내용

- (적용범위) 사용 과정에서 피부에 직접 접촉되어 유해물질로 인한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품
 - * 타 법에서 관리하는 품목 및 「전안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다른 안전기준으로 관리하는 품목은 제외하며, 상세 품목은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안) 참고

- (안전요건)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 제한
 - * 상세 안전요건은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안) 참고

붙임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2.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3. 합성수지제품(부속서 24) 제정(안)

3. 의견제출

[붙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 2019. 1. 11(금)
-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안 전 기 준

합성수지제품

부속서 24

(Plastic products)

서 문 이 기준은 가정 및 공공장소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로 된 합성수지제품으로서 피부에 직접 접촉되거나 접촉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식품위생법」과 같은 다른 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다른 안전기준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합성수지 재질로 된 합성수지제품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3. 종류

종류는 표 1과 같다. 여기서 합성수지 재질이라 함은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U(폴리우레탄), PVC(폴리염화비닐), PC(폴리카보네이트), PEVA(폴리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NBR(니트릴부타디엔고무), EVA(에틸초산비닐 공중합체), ABS, 실리콘 등이 있다.

<표 1> 종 류

구 분	종 류
매트류	요가매트, 돛자리매트, 주방매트 등
신발류 (주 재질이 합성수지로 구성되는 제품에 한함)	슬리퍼, 욕실화, 깔창 등
가방류 (주 재질이 합성수지로 구성되는 제품에 한함)	수영장 가방 등
기타류	휴대폰케이스, 짐볼, 이어폰 캡, 변기 시트 등

4. 안전요건

4.1 기계적·물리적 특성

4.1.1 겉모양

4.1.1.1 모양이 바르고, 찌그러짐,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고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

4.1.1.2 색상은 선명하고 색 얼룩이 없고 균일하여야 한다.

4.1.1.3 눈에 띄는 흠, 조각 등 상처가 없어야 한다.

4.1.1.4 인쇄 및 표시는 선명하여야 한다.

4.1.1.5 때, 거칠음, 먼지 등이 없이 끝손질이 양호하여야 한다.

4.1.1.6 터짐, 잔금이 없어야 한다.

4.2 유해물질 합성수지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		허용치
유해원소 함유량	총 납(Pb) ¹⁾	300 mg/kg 이하
	총 카드뮴(Cd)	75 mg/kg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DEHP	총합 0.1 % 이하
	DBP	
	BBP	

1. DEHP(Diethylhexyl Phthalate,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3.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비고 1.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5. 시험방법

5.1 겉모양 육안으로 확인한다.

5.2 유해물질

5.2.1 유해원소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5.2.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

6. 검사방법

6.1 모델의 구분 합성수지제품의 모델은 종류별, 주재질별로 구분한다. 다만, 재료시험을 위한 합성수지 색상만 다른 경우 동일모델로 간주하되 재료항목만 별도의 시험을 행한다.

7. 표 시 제품 또는 최소 단위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외의 한글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7.1 모델명

7.2 재질

7.3 치수 (해당 제품에 한함)

7.4 제조연월

7.5 제조자명

7.6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7.7 주소 또는 전화번호(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7.8 제조국명 (수입품은 대외 무역법에 의거 표기)

7.9 사용상 주의사항

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000호 (2018.0.00)